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 1. 굴착공사 신고제도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굴착공사와 건물신축 공사 등 사유지 안에서의 토지 굴착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유발하며,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굴착공사 신고제도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굴착공사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 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2.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내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수작업 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작업 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됩니다.

### ※ 신고 제외 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3. 신고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전화  
1644-0001



모바일  
m.eocs.or.kr



홈페이지  
www.eocs.or.kr



**업무처리 절차**



-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전화)하여야 한다.
- ※ 굴착위치의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를 해준다.
-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 하에 배관위치를 안내 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 후 굴착개시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된다.

**4. 미신고시 벌칙사항**

-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입회요청 않고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된다.
- ☞ 도로법에서는 도시가스사 관리자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EOCS 제도 도입에 따른 가스사고 감소효과**

※ EOCS 제도 시행후 사고가 대폭 감소하였고 굴착공사자도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사께서는 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신고(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 획기적 감소



## 6. 사고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

### ① 지하차도 연속벽 타경작업 (2015. 1월 부산)

- 구분 :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에 입회 전 굴착
- 개요 :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에 브레카를 장착하여 지하차도 연속벽을 타경하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켜 가스 누출
- 행정조치 내용
  - 시공사 : 벌금 200만원



### ② 신축상가 내 매설배관 터파기작업 (2015. 9월 김포)

- 구분 :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에 입회 미요청
- 개요 :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굴삭기로 터파기작업 중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 손상
- 행정조치 내용
  - 시공사 : 벌금 100만원



**③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 흠막이용 천공 작업 (2014. 3 의정부)**

- 구분 : 굴착공사 미신고, 도시가스사에 입회 미요청
- 개요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초 흠막이 공사 중 천공기(오거)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시켜 1,094세대에 3시간 15분 가스공급 중지됨
- 행정조치 내용
  - 도시가스사 : 과태료 550만원
  - 시공사 : 벌금 100만원



**④ 인천~김포 민자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굴삭기로 도로 콘크리트 철거 (2014. 8 인천항지하차도)**

- 구분 : 굴착공사 신고필, 도시가스사 입회 미요청
- 개요 : 인천항 지하차도 철근콘크리트 철거 중 굴삭기 압쇄기로 배관 손상
- 행정조치 내용
  - 시공사 : 벌금 300만원
  - 현장관리책임자 : 벌금 200만원
  - 작업반장 : 벌금 200만원
  - 굴착기사 : 벌금 200만원
- 가스배관 교체설치비용(PLP 150A 8.9m) 1,427만원 배상 (시공사 → 도시가스사)





**모든 굴착공사는 전화 1644-0001로 반드시 굴착신고를 하세요!**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도로 또는 토지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배관 매설유무를 확인 후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이 신고 굴착공사시 관계법에 의거 2년 이상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연평균 5.6 건	연평균 2.6 건 감소 (46% 감소)	연평균 3.0 건
제도 도입전 5년		제도 도입후 7년

굴착공사 가스사고 감소요과

**굴착공사 신고 방법**

- ▷ 전 화 : 1644-0001(전국 통일)
- ▷ 인터넷 : [www.eocs.or.kr](http://www.eocs.or.kr)
- ▷ 모바일 : [m.eocs.or.kr](http://m.eocs.or.kr)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